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일정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질병관리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3.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다만, 2023년 7월 31일 질병관리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약사회



주무관 **오준호** 환자관리팀장 **김정연** 전결 2023. 7. 25.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8989 (2023. 7. 25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9379 팩스번호 043-249- / junsky5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